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립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-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성별 고려 위촉 명시
-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
위원회 간사 변경 : 사서담당주사 → 도서관장
서기는 사서담당주사로 위촉
- 운영위원 위촉자 변경 : 도서관장 → 평생교육원장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평생교육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서담당주사가 된다.

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,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관장은 「도서관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한다.	제16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<u>평생교육원장(이하”원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② <u>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사서담당주사가 된다.</u>	② <u>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</u>
<신 설>	③ <u>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사서담당주사가 된다.</u>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<u>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,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u>	<삭 제>
<신 설>	⑤ <u>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,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</u>

⑤ (생 략)

서 원장이 위촉한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도서관법」

제30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[조례](#)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~ 차. 생략

3. ~ 4. 생략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생략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~ 마. 생략

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19조(소장)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0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미시평생교육원

가. ~ 사. 생략

아.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

자. ~ 카. 생략

소과 실 · 과		시립중앙도서관
입 안 자	관 장	김 덕 종
	담 당	우 춘 근
	담 당 자	이 윤 영 (480-4652)